

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02호
의결 년월일	2008. 9. 10 (제146회)

제안년월일 : 2008. 9. 3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8423호, 2007. 5. 11. 공포·시행)되고,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(대통령령 제20306호, 2007. 10. 4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른 인용된 조항을 개정 내용에 맞게 변경 함(안 제1조)
- 나. 소속 위원장 및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도록 전문위원의 설치 필요성과 역할을 강화함(안 제4조제1항)

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”를 “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고, “사무분장등”을 “사무분장 등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운영등”을 “운영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전문위원) 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.

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사진행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제5조 중 “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」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부천시규칙”을 “부천시의회 규칙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사무분장 등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(생략)</p> <p>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</p>	<p>제2조(사무국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운영 등----- -----.</p>
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생략)</p> <p>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</p>	<p>제3조(사무국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총괄----- -----.</p>
<p>제4조(전문위원)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</p> <p>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</p> <p>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</p>	<p>제4조(전문위원) 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.</p> <p>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의사진행을 보좌하고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</p> <p>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</p> <p>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<u>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</u>로 정한다.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<u>부천시규칙</u>으로 정한다.</p>	<p><u>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</u></p> <p>제5조(직원의 정원) ----- -----「<u>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</u>」----.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에</u> ----- -----<u>부천시의회의 규칙</u>----.</p>